

# **금지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1996.03.07(학무 81100-3219호 95.12.20)

개정 2002.12.18(관리 81412-2550호 02.12.06)

개정 2008.02.22(금지초등학교-469호 2008.2.27.)

개정 2011.09.14.(금지초등학교-5691호 2011.9.14.)

개정 2011.11.28.(금지초등학교-7304호 2011.11.28.)

개정 2014.9.11.(금지초등학교-6098호 2014.9.11.)

개정 2017.4.12.(금지초등학교-2526호 2017.4.12.)

개정 2021. 2. 3.(금지초등학교-1049호 2021.2.16.)

개정 2022.9.29.(금지초등학교-7162호 2022.9.2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금지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36-37에 둔다.

##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1조(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제 39조에 따라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휴가(여름방학)
3. 겨울휴가(겨울방학)
4. 학년말휴가(학년말방학)
5. 토요휴업일
6. 학교장재량휴업일

## 7. 국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

-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휴가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시킬 수 있다.

##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편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제2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급편성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 학급은 1명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운영.출결석.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1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2조(수업일수 및 운영)**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 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30일 이내 (가정학습 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제3조(출결석)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 1. 지각 :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2. 조퇴 :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④ 출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등 출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관련 지침에 따른다.
- ⑤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처리하되 해당 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 1. 개인 교환학습 : 1개월(4주) 이내
  - 2. 단체 교환학습 : 2주일 이내
  - 3.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
- ⑥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제4조(과정수료의 인정)**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질병·재해 및 사고로 인하여 재택 교육 및 병원 방문 교육을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간주하고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초등학교의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운영, 평가결과 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5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5장 입학.조기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조(입학)** ① 입학 기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해 교육장이 결정한 날짜로 하고,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입학(취학)은 「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 「초중등교육법」제12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29조: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2조(입학결정 및 조기입학)** ①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② 조기입학은 조기입학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만5세 아동을 말한다.

**제3조(편입학)**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서류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 제6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제18조 전학,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 제20조 유예 결정 및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금지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조(목적)** 학교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5.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3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5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④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1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한다.

-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한다.

1. 학교내 봉사
2. 특별교육 이수
3. 사회봉사활동
4.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훈육·훈계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학교 생활)** 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금지초등학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② 금지초등학교 생활규정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어린이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어린이회 임원을 뽑음으로써 어린이의 자치능력을 키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교어린이회의 규정에 의하여 전교 어린이회 임원을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한다.  
③ 기타 자세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제8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 제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제2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 (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제9장 기타

- 제1조(학교규칙 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의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중대 사안(학교용지 및 시설, 민원 관련문제 등)일 경우 교육장에게 학칙 개정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의 최종 승인된 학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의 최종 승인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교육감의 지침으로 학교 규칙의 개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 규칙 개정을 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금지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시행규칙)** ① 이 학교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칙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규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기타 지침(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부 칙

개정 1996.03.07(학무 81100-3219호 95.12.20)

- ① 이 학교의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12.18(관리81412-2550호 02.12.06)

- ②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02.22

- ③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02.22(금지초등학교-469호 2008.02.27)

- ④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09.14.(금지초등학교-5691호 2011.09.14)

- ⑤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1.28.(금지초등학교-7304호 2011.11.28)

- ⑥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9.11.(금지초등학교-6098호 2014.9.11)

- ⑦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9.11.(금지초등학교-6098호 2014.9.11)

- ⑧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4.12.(금지초등학교-2526호 2017.4.12.)

- ⑨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2.16.(금지초등학교-1049호 2021.2.16.)

- ⑩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9.29.(금지초등학교-7162호 2022.9.29.)

- ⑪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